

5. 土地의形質變更등 行爲許可基準등에 관한規則改正(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제1992-109號 1992. 8. 21

가. 개정사유

도시계획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하고 아울러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나. 주요개정내용

- (1) 토지의 형질변경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의 면적을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만 허가받도록 함.
- (2) 형질변경하는 토지의 용도가 같은 용도인 경우로서 50cm미만의 절토·성토·정지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 (3)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규정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4) 시장·군수는 허가의 기준이 될 입목

본수도, 땅의 기울기, 지반의 높낮이등을 미리 정하도록 함.

- (5)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는 형질변경허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 (6) 형질변경허가의 규모를 목적별로 정하고 있던 것을 용도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정함.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건축의 목적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장용지조성 목적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목적 : 1만제곱미터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생산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목적 : 1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목적 : 5천제곱미터 미만

- (7) 도시계획시설 설치예정부지내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함.

- (8) 최소폭이 5미터 미만으로 가늘고 길게 분할되거나 분할되는 선의 굴곡이 심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상이 되더라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의견제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

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명시)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